

•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1995.4.14. 조례25487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게재하거나 도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통보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설치 희망자를 파악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장애인수첩 사본 1부

4. 경로우대증 사본 1부

5. 모자가정대상자 증명서 1부

제5조(우선허가) 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 공유 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1992. 8. 20. 조례 제2335호) 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할 때에는 이를 시보 게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사본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영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1995. 1. 9, 조례 제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관리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의 자활 도모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반상회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위탁 관리)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사본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하여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취급품목·판매가격·건물관리·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지시, 기록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기타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촉진

•삼척시장에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1995.1.7 조례 제5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삼척시 남양동 346-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자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하되, 그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장이 따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삼척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회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시비

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작업장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삼척시에 귀속 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1994. 1. 6 조례 제8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백시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태백시 황지동 621-21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3.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자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①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백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시,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3.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 4.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태백시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1991. 5. 22 조례 제3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①보호작업장의 위치는 구리시 인창동 527-39번지에 둔다.

②작업장의 명칭은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보호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운영한다.

- 1.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한다.
- 2.장애인의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
- 3.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
- 4.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시설의 운영)①시장은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보호작업장의 이용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5조(위, 수탁협약의 체결)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보호작업장을 위탁 관리할 때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위탁기간등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보조)①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신의, 성실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과 장애자복지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 증축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과 동시 구리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시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0조(회계 및 결산)①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전년도 보조금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1990. 12. 10 조례 제6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①작업장의 위치는 광명시 철산동에 둔다.

②작업장의 명칭은 광명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 한다.

제3조(작업장 운영내용)①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장애인을 위한 기술교육

2.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

3.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②작업장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의 수익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적임자를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사용료)시설의 사용자-사용료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보조) 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등의 수익금을 작업장운영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 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제8조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검사에 불응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제10조(위-수탁 협약의 체결) 시장은 위탁기간동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동해시장에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1995. 11. 20 조례 제9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동해시 북평지방공단 9B-1L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작업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해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기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수탁자는 동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동해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동해시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1994. 3. 10 조례 제24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기도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2-2번지 패토리월드 아파트형 공장 1층 102호에 둔다.

제3조(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①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제1항 중 장애인 고용의 결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제6조(직원)①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의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급여)①제5조 제1항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 1항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장애인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승인)①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7조 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8조 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감독) ① 도지사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복지관설치 및 운영

●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1990. 10. 25 조례 제12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회관의 명칭은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보기회관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둔다.

제4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후생복지사업

2. 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

3. 장애인의 자질 향상과 취업을 위한 교육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

제5조(운영) 1. 복지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사용한다.

2. 복지회관의 사용은 관내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 지체장애인자회

2. 농아 복지회

3. 맹인 복지회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체

제6조(위탁관리운영) 1.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단체중에서 관리자를 지정,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 단체들간의 총대표하는 자를 선출도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시킬 경우에도 복지회관의 효율적이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계약해제) 1.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자가(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 규칙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였을 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칙(1990. 10. 25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1994. 11. 23 조례 제13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 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2-1번지와 10필지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 교육과 계몽 사업

5.장애인 등의 취학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7.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장애인 행상에 관한 사항

10.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복지관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안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선정 지침에 의거 수탁자로 결정한다.

③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계약에 의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1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진단될 때

3.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은 안양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기구 및 인력은 보사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 기준 및 정원범위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한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4.11.23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1995.4.17 조례 제136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설치한 성남시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이하 “재활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

제2조(소재지) 재활복지회관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둔다.

제3조(사업운영) 재활복지회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상담사업: 건강관리, 직업알선, 직업, 결혼 등의 상담 사업

2.직업훈련사업: 기능훈련, 직업훈련등

3.재활훈련사업: 기능회복운동, 생활적응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4.교육사업: 점자-수화강습등

5.기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재활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직업훈련실

2.재활훈련실

3.상담실

4.예식장(회의실)

5.교육실

6.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①재활복지 회관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장애인 관련 단체의 사무실은 무상으로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재활복지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수탁 협약) ①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2년으로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①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예산 및 운영에 따른 지도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다음연도 개시 10일전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실적을 포함한 보조금 정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예산 지출 증빙 자료를 비치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재활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재활복지회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기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95.4.17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직할시 맹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2. 11. 3 조례 제295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맹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맹인복지회관(이하 “맹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맹인복지관은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1동 산57의 2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 맹인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2. 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상담
3. 점자도서실 운영 및 녹음서 출판
4. 재가 시각장애인 지도사업
5.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6.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 (운영) ①맹인복지관의 운영은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맹인복지회부산지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맹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직할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운영비 보조)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맹인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익사업) 사단법인 맹인복지회부산지부가 맹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경우, 맹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맹인복지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1993.11.13 조례 제3155호 / 개정 199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78-5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개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 ①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진료비는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기타 치료 및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보조대상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과 진료비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철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감독) 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1989.4.17 조례 제1509호 /개정 1991. 3. 23 조례 제16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제주도 아라동 396번지의 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의 취학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 진로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회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회관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위탁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지정은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회관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④회관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회관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

는 수탁받은 도유재산 부지내에서 시설물의 신·증축, 형질변경 또는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7조제4항에 정한 수입금 및 보조금을 본 회관의 운영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회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리의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도에 귀속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1990. 11. 19. 조례 제1956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치) 복지관은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846-1번지에 둔다.

제 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 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서비스상담, 평가 및 판정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적응지도사업
3. 학습지도, 스포츠, 레크레이션 지도사업
4. 장애인 발생예방교육
5. 보장구, 생활용품, 편의시설 및 생활지원사업
6. 시설운영 활성화 및 종사자 연수교육
7.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복지서비스 개발
8. 재활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교환
9. 민간모금 및 수익사업 개발
10.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자체수익사업
11.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 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 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 7조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복지관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1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재무, 회계)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보건사회부 훈령 제83조, '88.1)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동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1990. 7. 13 조례 제179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55-24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우선 한다.

제6조 (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②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개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공과 동시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

제12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지관 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생활보호대상자	일반	
물리치료 (언어, 심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심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20,000원	
기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설비		

• 대구직활시장에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

(제정 1984.6.20 조례 제1813호, 개정 1991.2.1 조례 제25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기회 부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증진코자 대구직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1.2.1)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구직활시 수성구 파동 1번지의 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생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의 행사 및 모임의 중추기능역할
7. 장애인 체위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복지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09-D지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수탁받는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입금,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지관 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생활보호대상자	일반	
물리언어작업등기타치료	보건사회부장관이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 38조에 준함		
직업훈련	1인1개월	무료	15,000원	전산교육전산기기교육,금은세공교육,보석가공교육,도자기등 기타교육
유아원	1인1개월	무료	5,000원	
양궁장	1회10발	100원	100원	
사격장	1회10발	100원	100원	
도서실		무료	무료	
기타시설		무료	무료	

•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1991. 4. 4 조례 제209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설치한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장애인복지관은 나주시 삼영동 산 48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장비지원과 장애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 (이용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탁 운영할 자의 지정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보건사회부 장애인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도지사가 정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임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1년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회관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	
		생활보호대상자	일반
물리치료실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합 진료 수가 및 약가	심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15,000원
도서실		"	무료
기숙사	1인당 1일	"	1,000원
강당	1일	"	50,000원
기타시설		"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1992. 6. 26 조례 제2159호 개정(1995. 4. 18 조례 제23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을 창원시 봉곡동 179-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자 행사 및 체육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용) ① 도지사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다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같은 지번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상남도에 기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⑦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

제7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우선한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운영권자는 별표 1의 징수기준에 의거 이용자로 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장애인(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과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① 복지관의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10%범위 내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 지원부담기준에 의한다.

③ 수탁자 부담금은 이용료와 자체수익사업 이익금 및 법인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보고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

(1987.8.27 조례 제1584호/ 개정 1995.9.15 조례 제2496호)

제1호(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자활 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대전광역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19번지의 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지정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2. 자립진로개척을 위한 정보 교환과 행사 및 모임의 중추기능역할
3. 장애의 발생예방사항
4.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재활의료에 관한 사항
6.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취학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8. 체위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대상을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입금, 수탁자 부담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1984. 12. 5 조례 제1243호/ 개정(1988. 7. 12 조례 제1475호/ 개정(1991. 1. 9 조례 제1698호)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 1. 9)

제2조 (명칭) 회관의 명칭은 수원시 재활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복지회관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둔다.

제4조 (업무)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교육(개정 91. 1. 9)

2. 장애인을 위한 상담(개정 91. 1. 9)

3.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개정 91. 1. 9)

4. 장애인을 위한 후생복지사업(개정 91. 1. 9)

5.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개정 91. 1. 9)

제5조 (운영) ①복지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재활실, 상담실 등으로 사용한다.(개정 91. 1. 9)

②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맹인 복지회

2. 농아 복지회

3. 신체장애인 복지회

4. 장애자 재활협회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재활단체(개정 91. 1. 9)

제6조 (공무원) ①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 경우에 의한 공무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관리운영) ①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사용단체중에서 관리자를 지정 위탁 관리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시킬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7. 12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9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1991.12.12 조례 제11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부천시 중구 작동 57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재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장애인의 사회 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 교육과 계몽사업

5.장애인 등의 취학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6.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7.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관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 1"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생활보호대상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복지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별도 기준에 의하여 수탁자를 지정한다.

③복지관 운영비는 회관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부천시에 귀속된다.

부칙(1991.2.12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1966.9.13 조례 제193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05-5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7. 재활,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9. 장애자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심신장애자의 복지향상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심신장애자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을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회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강원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강원도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지관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생활보호대상자	일반	
물리치료실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사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심신장애자 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15,000원	
기숙사	1인 1일	무료	1,000원	
강당	1일	무료	30,000원	
기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설비	

■ 위원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1993. 5. 11 조례 제29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5조, 장애인 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 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연구·조정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 사항
3. 생활보호사업의 시행계획 및 보호기금의 적립, 관리와 사용
4. 기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3.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의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제주형 장애인복지시책

■ 제주형 장애인복지시책

제1절 제주도 장애인 실태 및 현황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장애인구 출현율

보건 사회연구원의 90년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은 인구 천 명 당 22.10명으로 1994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수는 총 1,005,818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유형별 인구를 살펴보면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576,639명으로 전체장애인의 거의 60 %에 육박할 만큼 많으며, 그 다음은 청각 및 언어장애(30.1%), 시각장애 (23.4%), 정신지체장애(8.8%)의 순이었다. 이같은 장애출현율을 제주도 인구에 적용했을 경우 94년도 현재 제주도의 장애인은 총 11,369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인인 6,518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인 3,426명, 시각장애인인 3,426명, 정신지체인이 1,003명으로 추산된다.

<표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1994년 현재)

장애인유형	출현율	전국 1)		제주도 2)	
		추정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등록율)	추정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등록율)
지체장애	12.67	576,639	208,922(36.2)	6,518	3,333(51.1)
시각장애	5.16	234,843	20,526(8.7)	2,655	336(12.7)
청각·언어장애	6.66	303,111	35,596(11.7)	3,426	471(13.7)
정신지체	1.95	88,749	44,002(49.6)	1,003	700(69.8)
계	22.10	장애인수1,005,818	-	장애인수 11,369	장애인수 4,840(42.6)

주 : 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 1991년 전국인구에 적용하여 산출해냄
자료 : 제주도청, 1994.

그러나, 1995년 현재 실제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주도의 경우 총 4,840명으로 장애인등록율은 40% 수준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등록율이 각각 12.7%와 13.7%로, 69.8%를 기록한 정신지체장애인이나 51.1%의 지체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각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등록율이 낮은 것은, 시각 및 청각 장애의 경우 노령화에 따른 능력감퇴나 노인성 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장애'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모든 장애유형에서 제주도의 장애인 등록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데 특히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등록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지체장애인의 경우 전국 평균은 36.2%인 반면, 제주도는 51.1%나 되고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전국 평균은 49.6%이나 제주도의 경우

이보다 약 20%가 더 높은 69.8%이다. 결국 제주도의 전체 평균 장애인등록율은 42.6%로 전국 평균 36%에 비해 6.6%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제주도 장애인의 등록율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장애인이 다른 지역 장애인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며 권리의식이 더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주도의 등록율이 높다고 해도 아직 절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주된 이유는 등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적은 반면, 사회적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우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보인다. 장애인의 등록율이 낮을수록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지므로 장애인 대상의 정책수립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그만큼 더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등록장애인에 대한 혜택강화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 등록 제도 홍보, 장애인 등록제도의 간소화 등을 통해 장애인 등록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등급별 장애인구

전국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최중증은 아니지만 비교적 장애가 심한 2-3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정도가 약한 5-6등급의 비율이 가장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등급별 분포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국의 경우 2급이 전체의 2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 3급 (21.5%), 4급 (19.9%), 1급 (16.3%), 5급 (9.5%), 6급 (6.5%)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제주도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과 마찬가지로 2등급이 2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등급으로 20.6%, 그리고 1등급이 19.1%로 세 번째로 비율이 높아 전국 평균에 비해 장애가 가장 심한 1등급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3등급 (18.5%), 5등급 (10.6%), 6등급 (6.1%)의 순이었는데, 장애가 약한 5-6등급의 비율이 낮다는 것 또한 전국 평균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2> 장애등급별 분포

장애유형 장애등급	전국 1) (1994년 현황)		제주도 2) (1995년 현황)	
	장애인	비율(%)	장애인	비율(%)
1급	45,071	16.3%	923	19.1%
2급	71,637	26.3%	1,212	25.0%
3급	59,403	21.5%	897	18.5%
4급	54,869	19.9%	997	20.6%
5급	26,116	9.5%	515	10.6%
6급	18,208	6.5%	296	6.1%
계	276,304	100.0%	4,840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1994-김통원 [장애의 정의·분류·통계·등록] 1995 재인용

제주도청, 1995.

3) 성별 및 연령별 장애인구

1990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근거해 성별 장애인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의 남자 장애인은 총

525,852명으로 전체의 56.11% 그리고, 여자가 411,372명으로 전체의 43.89%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제주도 등록장애인의 성별 분포 역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다는 점에서 전국 추정치와 일치하나, 성별 구성비에 있어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1995년도 현재 제주도의 남자 장애인은 총 2,960명으로 전체의 6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1,785명으로 37.62% 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표 3 > 장애인의 성별 분포

전국추정치 1)		제주도등록장애인 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25,852명(56.11%)	411,372명(43.89%)	2,960명(62.38%)	1,785명(37.62%)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 1991. 제주도청, 1994

다음으로 장애인구의 연령별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전국의 경우는 < 표 4 > 와 같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출현율 역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70세 이상에서 장애 출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 장애인 출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많고 또, 노화현상에 수반되어 각종 신체적 장애가 나타나는 경향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전국 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및 구성비

연령	전국장애인출현율(%)	연령	전국장애인출현율
0-4	2.61	45-49	26.55
5-9	5.67	50-54	35.76
10-14	7.46	55-59	48.87
15-19	8.28	60-64	68.37
20-24	12.65	65-69	82.40
25-29	13.42	70-74	98.27
30-34	19.61	75-79	112.33
35-39	20.00	80세이상	125.19
40-44	19.14		
계	22.32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 1991.<표3-5>재구성.

한편 제주도청의 내부자료에 근거해 제주도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의 경우 5-10세의 아동인구는 전체 장애인의 2.91%, 그리고 11-20세의 청소년 인구는 전체의 10.37%,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층은 전체의 86.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장애인의 연령별 구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5> 제주도 등록장애인의 연령별 장애인구 및 구성비

구분	제주도 등록장애인구	구성비(%)
5-10	138	2.91
11-20	492	10.37
20세 이상	4,115	86.72
계	4,745	100.0

자료 : 제주도청, 1994

4) 지역별 장애인구

제주도의 등록장애인의 지역별 분포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제주도 장애인 지역별 분포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계	4,840	3,333	336	471	700
지역	제주시	1,894	1,294	130	193
	서귀포시	724	503	57	49
	북제주군	1,370	922	106	170
남제주군	852	614	43	59	136

자료 : 제주도청, 1995.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제주시로 전체 1,894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북제주군으로 1,370명, 그리고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 각각 852명과 72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별 분포 현황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센타 등을 건립할 때 중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경제생활수준

대체로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조사에서 일치하고 있는 사실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90년도에 실시한 전국조사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표 7>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장애인가구의 경우 빈곤층 비율이 높고, 중상위계층의 비율이 낮은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의 빈곤층 가구 비율이 비장애인가구의 경우는 28.2%에 그쳤으나 장애인가구는 무려 절반이 넘는 56.1%를 기록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중상위계층은 장애인가구가 18.0%로서 32.0%의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이다.

<표 4-2-7>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	장애인가구	비장애인가구
50만원 미만	56.1	28.2
50-99만원	32.2	76.1
100-149만원	7.6	15.6
150만원 이상	10.4	16.4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보고], 1991. <표3-10>

이처럼 장애인가구의 경제수준이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인 경우 취업이 어렵고 또, 취업이 된 경우 하더라도 불안정적이고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되며 특히, 가구의 주소득원인 가구주가 장애인일 경우의 빈곤문제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장애인일 경우 빈곤화 확률은 무려 7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일 : 1994 재인용)

가구주가 장애인일 경우의 빈곤화 확률은 10개의 빈곤화 요인 가운데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80.2%)'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빈곤을 야기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어, 이들의 경제생활수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낮으며 또 빈곤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일반적인 특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장애인 취업분포

김통원교수가 재정경제원, 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92년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장애인은 총 436,14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84%를 점하고 있는데 이 중 취업자가 67.2%이며 실업자는 32.8%이다 (김통원, 1995). 이같은 수치는 전체경제활동인구의 실업율 2.4%의 13배가 넘는 매우 높은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실업율이 높은데, 취업을 한 경우라도 저임금 직종에 취업한 경우가 많음을 <표 8>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농어민 33.2%, 자영업 20.1%, 노무직 15.3%, 생산직 13.9%로서,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직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사무직 비율은 단 2.5% 밖에 되지 않는다.

<표 8> 취업장애인 직업별 현황(%)

자영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	노무직	서비스	농어민	기타	합계
20.1	5.0	25	13.9	15.3	5.7	33.2	4.3	100.0

자료 : 김통원 "장애인의 정의·분류·통계등록", [아태장애인10년 연구모임자료집], 1995

한편, 3개 장애인단체 회원 가운데 현재 취업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장애인의 취업분포를 제주

도 경제인구의 취업분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9>와 같다. 장애인들이 취업한 직종은 대부분 저임금 직종이라는 점에서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장애인의 취업현황을 검토하기에 앞서 제주도 경제인구의 전체적인 취업분포를 살펴보면, 1993년 현재 제주도 경제인구 248,000명 가운데 60%가 3차 산업에, 34%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단 6%에 불과하다. 이는 제주도가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직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3차 산업 종사비율이 높으며 또, 감귤, 파인애플 등 과일재배를 하는 가구가 많아 1차 산업 종사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제주도 장애인의 취업분포를 이와 비교해 보면, 3차 산업이 66%로 종사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으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더 낮고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장애인은 전체의 17%로 제주도 경제인구의 1차 산업 종사율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 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16%로 제주도 경제인구 전체의 2차 산업 종사율의 2.6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의 장애인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없는 단순직업이나 3D 업종에 종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따라서, 제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보조 정책의 강화와 함께 직업재활 및 알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9> 제주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취업분포 비교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분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제주도 경제인구(1993년)	248,000	83,000(34%)	14,000(6%)	151,000(60%)
3개 장애인단체 회원*경제인구(1994)	989	176(17%)	158(16%)	665(66%)

주 : *3개 장애인단체 :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한국농아복지회제주지부,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주지부
자료 : 이익섭교수 초청 간담회 자료집, 1995.

7) 장애인의 의료생활실태

제주도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생활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9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의료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는 표본의 규모가 크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사결과가 제주도 장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 이용한 의료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즉,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이 전체의 78%로 가장 높았으며 한의원 10.7%, 약국 6.7%, 기타 3.2% 순으로 이용율이 높았다. 또, 이들 기관 외에 복지기관, 교회 및 종교기관, 민속치료를 이용했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병의원, 한의원, 약국의 순으로 의료기관 이용율이 높은 경향은 대체로 모든 장애유형에서 공통적이나 언어장애인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결과를 보였다. 즉, 언어장애인의 경우 약국을 이용했다는 응

답이 75.5%로 가장 높은 반면,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이 10.0%밖에 되지 않아 다른 장애에 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용의료기관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정신지체인의 경우 민속치료를 받은 비율이 1.5%로 다른 장애 유형에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대 의학이 아직까지 정신지체장애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고 또, 정신적인 장애와 관련된 전통적인 미신이 결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10> 장애발생 후 첫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기관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병·의원	78.0	77.5	84.7	81.5	10.0	60.4
약국	6.7	6.3	7.9	9.5	75.5	2.7
한의원	10.7	14.5	4.4	5.9	3.1	7.4
복지기관 1)	0.3	0.3	0.2	-	0.7	1.2
교회 및 종교기관	0.3	0.3	-	0.4	0.3	0.4
민속치료	1.0	-	-	-	0.3	1.5
기타	3.2	1.1	1.9	2.7	-	26.4

주 : 복지기관에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원, 사회복지관이 포함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 1991.<표18>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처음 의사의 치료를 받은 시기를 살펴보면, 장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은 장애인이 전체의 약 60%로 가장 많았으며 1~3개월 이내, 4~6개월 이내 등 1개월 이내외의 경우는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2.1%나 되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낮은 의료혜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이 특히 높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 언어 장애, 정신지체장애로 각각 39.6%, 34%, 35.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장애발생 이후 즉시 의사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주된 이유가 장애인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장애가 발생한 이후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애인의 32.7%가 '경제적으로 곤란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외에는 '잘 몰라서 (21.8%)', '심하지 않아서 (13.3%)', '나을 것 같지 않아서 (9.6%)', '곧 나을 것 같아서 (7.9%)', 근처에 이용할 병·의원이 없어서(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187)

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45.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처럼 의사의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은 치료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란 비율이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중에서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89%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이 현재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표-11>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사용률이 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지체장애인 (90.3%), 언어장애 (83.8%), 청각장애인(83.3%)의 순이었으며 정신지체인의 보장구 사용률이 가장 낮은 77.5%였다. 보장구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효과가 없기 때-

문'이라고 한 장애인이 32.3%, '착용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25.8%, '성능이 나빠서'가 10.4%, '미관상 보기가 흉해서'가 10.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장애인들은 보장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능에 관한 욕구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1>장애인의 보장구 사용 여부(단위 : %)

사용여부	전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예	89.2	90.3	91.0	83.3	83.3	77.5
아니오	10.8	9.7	9.0	16.7	16.2	22.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 1991. < 표 24>

2.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1) 제주도 장애인 복지 행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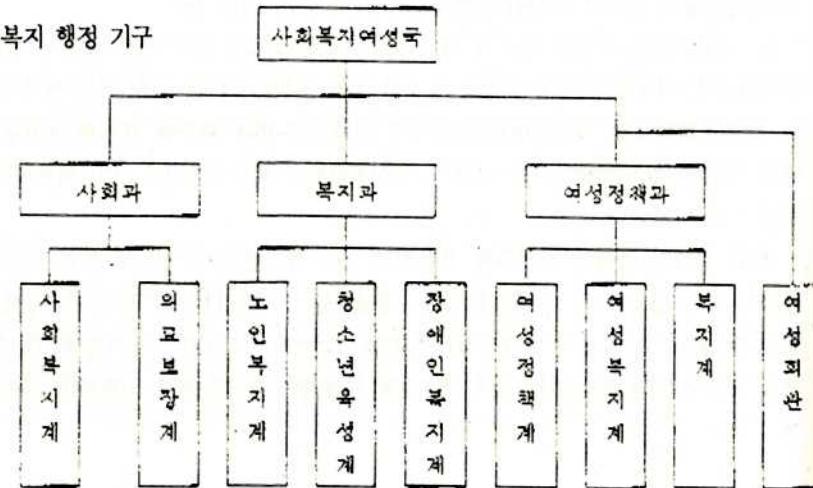
(1) 행정기구

제주도 전체의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는 도청내 사회복지여성국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여성국내 복지과 산하의 장애인복지계이다. 장애인복지계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행정, 시설 지원 및 육성, 재가장애인복지업무, 정신질환, 부랑인보호업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행정조직의 인력구성

제주도 장애인 복지 행정조직의 인력구성은 <표 4-2-14>와 같다. 가정복지국의 총 인원은 40명이며 이 중 장애인 복지계가 속해 있는 복지과의 인원은 총 18명이다. 이 18명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를 모두 담당하고 있어 제주도의 복지 행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등록장애인 인구만 해도 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복지행정인 원활히 수행되기에 복지행정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제주도 장애인복지 행정 기구



<표 12>제주도 장애인복지 행정 조직(사회복지여성국)의 인력구성 (단위 : 명)

구분	사회복지여성국(34)		
	사회과	복지과	여성정책과
현인원	11	12	11

자료 : 제주도청, 1995.

2) 시설현황

(1) 이용시설현황

199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이용시설 현황은 <표13>와 같다. 전국적으로 복지관은 종합과 종별 을 합쳐 총 37개소이며 재활병의원이 13개소, 그리고 체육관이 9개소로서 이용시설수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즉, 95년도 전국의 재가장애인 추정수를 근거로 살펴보면, 복지관의 경우 인구 27,806명당 1개 꼴이며 재활병의원은 79,141명당 1개, 그리고 체육관의 경우는 인구 114,315명당 1개꼴에 불과하다. 또, 시설의 지역적 분포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많은 시설이 서울 및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인천, 강원, 전북의 경우는 종합복지관이 각 1개씩 있는 것을 제외하면 장애인 이용시설이 전무한 청평이며 충북, 경북, 경남, 제주에는 종합복지관과 재활병의원이 1개씩 있을 뿐이다.

<표 13>장애인 이용 시설 현황

(95년 12월 31일 현재)

지역구분	복지관		재활병의원	체육관
	종합복지관	종별복지관		
서울	6	11	2	4
부산	1	1	1	0
대구	1	0	1	1
인천	1	0	0	0
광주	1	1	1	1
대전	1	0	1	1
경기	3	0	0	1
강원	1	0	0	0
충북	1	0	1	0
충남	1	0	1	1
전북	1	0	0	0
전남	2	1	1	0
경북	1	0	1	0
경남	1	0	1	0
제주	1	0	1	0
합계	23	14	12	9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주도의 장애인 이용시설 및 구체적인 시설현황은 <표 14>과 같다. 제주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상담 및 판정평가,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지역사회복지사업,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등으로 다른 지역의 종합복지관 사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단 문제는 제주도 내에 복지관이 이 곳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재활의원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재활의학과와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내에 단 1곳의 재활병의원만이 있을 뿐이어서 실제로 이곳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수는 매우 제한적 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1995년도 현재 제주도의 등록장애인수 약 4,800명 그리고 추정장애인수는 12,000여 명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애인 복지관과 재활병의원이 각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은 제주도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4>제주도 장애인 이용 시설 (1995년 현재)

시설명	설립 년도	설립 년도	1일이용인원	직원 현황	사업내용	비고	운영주체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1989	120명	23명	1. 상담 및 판정평가 2. 사회심리재활 3. 교육재활 4. 직업재활 5. 의료재활 6. 지역사회복지사업 7.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사회복지 법인춘강
	분관	1994	25명내외	5명	자활치료·작업 심리치료, 언어치료		
제주도재활의원		95년실적 : 총 10,375건 무료 1,120 의보: 9,255		8명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생활의료보호대상자 및 1급 장애인 : 무료 ○ 기타 장애인 및 일반인 : 의료보험수가적용 (장애인은 본인부담액 50%)	사회복지 법인 춘강 부설	

자료 ; 제주도청, 1995.

이처럼 장애인 이용 시설의 열악한 상황은 제주도 장애인들이 이용시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1995년 8~9월에 실시한 [사회복지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제주도 내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6.3%,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44.5%로 전체의 80% 이상이 제주도의 장애인 시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단 5%뿐으로 전체의 95%가 전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처럼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이유는 동떨어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무려 88.1%나 되었다. 이처럼 제주도 내의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이용경험이 낮은 것은 전체적으로

로 복지시설이용자의 불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70%이상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주도 장애인 시설이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제주도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수용시설현황

1995년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장애인 수용시설은 총 233개소이다. 이중 중증요양시설과 정신지체인 대상의 수용시설이 가장 많아 각각 55개소와 52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95년 현재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수는 중증요양시설의 경우 총 4,164명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의 경우는 총 5,544명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다. 반면, 지체장애인 대상의 수용시설은 34개소로 총 3,012명이 청각·언어장애인 대상의 수용시설이 14개소에 총 1,044명이 그리고 시각장애인 대상의 수용시설은 11개소로 657명이 수용되어 있을 뿐이다.

또, 근로시설은 총 8개소로 이곳에는 총 419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처럼 중증요양시설과 정신지체인 대상의 수용시설이 더 많고 또 여기에 수용된 장애인수가 많다는 사실에서 장애정도가 심해 전문인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일수록 수용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용시설 역시 서울 및 수도권에 가장 많은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인천, 강원, 제주의 경우 각각 8개소, 5개소, 2개소로 시설 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의 경우 수용시설 수는 2개뿐으로 전국의 도와 주요 시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의 수용시설 2곳은 정신지체장애인 대상의 시설 '아가의 집'과 제주도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근로시설로, 1995년도 현재 이곳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약 65명 정도가 된다.(보건복지부 자료에는 각 35명과 27명 그리고 제주도청 자료에 따르면 각 40명과 28명으로 95년도의 경우 대체로 약 65명 내외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 수용장애인수를 65명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의 시설 수용비율은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1.3%, 그리고 추정장애인의 약 0.5% 수준에 불과할 만큼 열악한 실정이다.

제주도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5>과 같다. '아가의 집'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교육, 의료,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시설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에서는 목공예, 창호 제작, 세탁공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15>제주도 장애인 수용 시설 현황(95년 현재)

시설명	설립년도	수용인원 (1일 이용인원)	직원현황	사업내용	비고	운영법인
아가의 집	1988	40명 (남23, 여17)	16명	정신지체아의 보육, 교육, 의료, 재활	생활보호대상자:20명 (생계비→국고 월72000원) 유료입소:15명(월96000원→보호자부담) 무연고자 : 5명 (생계비→국고 월72000원)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춘강장애인 근로센타	1989	작업인원 28명 (남17, 여11)	8명	목공예 창호제작 세탁공장		사회복지법인 춘강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다 많은 수용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장애인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한번쯤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무조건적으로 수용시설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용시설 및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는 '사회통합' 및 '정상화'로서 이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기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선진국의 장애인복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의 장점과 효과성은 이전의 격리수용과는 비교할 수 업을 만큼 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은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4개소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시범사업으로 설치 운영한 바 있는 서울시의 경우 약 10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운영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응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박태영, 1995)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에도 선진국과 우리나라 일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선진 복지 프로그램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시범사업으로 이를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 현황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95년 현재 제주도의 경우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물은 총 1,403개이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물은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는 것', '경사로 설치', '장애인용화장실'로서 각각 739개, 211개, 210개가 있다. 이 외에 주차장 78개, 공중전화 53개, 유도로신호장치 41개가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도청이 자체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 미이행시 규제

사항'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근거'가 미약하여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많은 관광명소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하여 제주거주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광차 제주도를 방문한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기존 관광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관광지 개발 및 신건축물 건립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제주도 장애인 편의설물 설치현황(95년 현재)

구분	계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횡단보도 턱낮추기	공중전화	유도로신호장치
계	1,403	211	71	210	78	739	53	41

자료 : 제주도청, 1995.

(3) 제주도 장애인 단체

1996년 현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제주도 장애인 복지단체로는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한국농어복지회제주지부,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지부 등 모두 3개이다. 이 3개 단체의 회원수와 주요 사업을 제시하면 <표 17>과 같다.

단체의 활동 및 영향력을 평가하는 척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바로 단체가입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가입율에 근거하여 제주도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평가해 볼 경우 그 영향력과 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의 경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계몽사업 및 재활사업·수의사업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총 1,200여명으로 제주도 지체장애인 전체의 추정수가 8천 여명에 이른다고 했을 때 약 15%의 지체장애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및 알선, 생활훈련, 복지시설설치 장려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주지부의 회원수는 324명으로 제주도 전체 시각장애인 추정수(858명)의 무려 40%에 이르고 있다. 또, 청각장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농어복지회 제주지부의 경우는 제주도 청각·언어 장애인전체(2,233명)의 약 8%인 179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단체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전체 청각장애인 가운데는 노인성 청력상실에 의한 장애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장애인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7> 제주도 장애인 단체 현황

단체명(설립년월일)	회원수	사업내용	등록형태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82.2.15)	1,200	-회원단체상호유대 -조사,연구,교육계몽사업 -재활사업 및 수익사업	사회단체 (제주도)
한국농아복지회 제주지부 (81.1.27)	179	-회원단체상호유대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계몽 -청각장애인의 자질향상사업 및 능력개발사업	사단법인 (보건복지부)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주지부(94.12.19)	324	-회원단체상호유대 -시각장애인의 직업교육 -생활훈련, 복지시설의 설치장려 -시각장애인복지사업	사단법인 (보건복지부)

자료 : 제주도청

이처럼 제주도의 장애인 단체는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애유형 가운데 정신지체장애인단체의 경우 96년 현재 제주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없는 것이 다소 문제로 파악된다. 정신지체장애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이제까지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정신지체장애인 가족들간의 유대활동 및 정보교환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제주도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인단체를 양성화하여 후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

1) 장애인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정부와 제주도의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18>과 같다. 여기서 2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1990년도부터 94년까지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부의 경우는 평균 3.1%수준인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평균 7.4%로 정부에 비해 약 2.4배가 높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의 경우는 1990년도 3.18%, 92년도 2.96%, 94년도 3.59%로 최근 5년 동안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90년도 6.73%, 92년도 8.19%, 94년도 9.71%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치에 근거했을 때 예산 면에서 제주도의 장애인복지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부여된다.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공적부조로 95년도의 경우 45.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보육사업과 노인복지사업으로 각각 전체의 22.07%와 14.77%로 집계되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9.73%로 7개 분야 중 네 번째를 기록하였다.

<표 18> 사회복지예산구모비교(단위: 십억원)

년도별	국가전체예산 1)			제주도 예산 2)		
	사회복지 예산(A)	장애인복지 예산(B)	(A/B)%	사회복지 예산(C)	장애인복지 예산(D)	(C/D)%
1990	974	31	3.18	9.21	0.62	6.73
1991	1,269	35	2.76	10.61	0.64	6.03
1992	1,352	40	2.96	11.60	0.95	8.19
1993	1,450	46	3.17	15.60	0.98	6.28
1994	1,534	55	3.59	18.08	1.75	9.71
1995				21.46	2.09	9.73

자료 : 보건복지부, 1994 : 제주도청, 1995

<표 19>제주도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

년도	계	공적부조	노인	아동	장애인	부녀	보육
1994	18,081,318 (100.0%)	8,651,299 (47.85%)	2,447,190 (13.53%)	1,244,193 (6.88%)	1,755,000 (9.71%)	395,818 (2.19%)	3,587,818 (19.84%)
1995	21,465,790 (100%)	9,744,505 (45.40%)	3,171,007 (14.77%)	1,298,026 (6.05%)	2,087,621 (9.73%)	428,000 (1.99%)	4,736,631 (22.07%)

자료 : 제주도청 1995

제주도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표 20>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1996년도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재활의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약 16억 4천 1백만원으로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77.4%나 되었으며,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6.7% 비율을 점하고 있다. 기타 장애인사업의 경우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6.8%, 불우장애인전세금이 3.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의 보상이 2.7%의 비율을 보였으며 장애인의료비(장애인의료비와 중증장애인의료비) 포함 및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은 각각 전체 장애인 예산의 1.7%와 0.9%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표 20> 제주도 장애인 관련 세부예산 내역

사업명	1995년도				1996년도				예산비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장애인시설	아가의 집	245.8	176.4	55	14.4	326.4	220	75.7	30.7
	춘강장애인근로센타	157	91	45.1	20.9	611.2	324	264.1	23.1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	527.6	185	342.6		537	214	323	
장애인단체	제주재활의원	172.8	63	107.8	2	166.6	60	103.8	28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24		24		29		29	
	한국농어복지회제주지부	28		28		28		28	
기타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지부	80	31	49		86	28	58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102	102		144	101		43	6.8%
	장애인의료비	3.4	2.7		0.7	3.1	2.5		0.6 0.1%
	장애인자녀교육비	23	19		4	2	16		4 0.9%
	장애인보장구	7	5.6		1.4	7	5.6		1.4 0.3%
	불우장애인전세금				70	35	35		3.3%
	중증장애인의료비	14		7	7	34		17	17 1.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보상		56		56		57		57	2.7%

자료 : 제주도청, 1996.

이처럼 장애인복지예산이 시설운영 및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욕구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구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은 다소 미흡한 상태로 판단된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도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제주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복지정책현황

(1) 소득보장

장애인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 장애인 대상의 소득보장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빈농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으로는 공적보조 제도와 각종 사회 보험,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등이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9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6.4만원으로 일반 가구의 135.3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또, 95년 현재 전체 장애인 가구의 12.1%가 생활보호대상자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중 4.4%가 거액보호대상자이며 6.3%가 자활보호대상, 그리고 1.4%가 시설보호대상이다. 이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제주도의 경우 96년도 도예산을 근거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총 144,000,000원을 300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49명의 장애인 가구에 대해 총 20,0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②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거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 업무상 재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해연금 또는 사학연금, 산재보험에 의하여 장해연금 및 장애보상금이 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현대 장해연금 및 장애보상금을 받은 중도장애인은 3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군인연금의 상이 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관련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춘 경우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을 받게 된다.

③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

소득의 간접보조방식인 경제적 경감제도는 직접적인 소득보장과는 달리 경제적 부담과 지출을 줄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경제적 부담경감의 내용을 보면 조세감면과 장애인 이동 및 통신수단등 접근권과 관련비용을 감면해 주는 각종 제도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할인, 항공료할인, 장애인전화요금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엘피지연료 사용허용 등으로 이와같은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것으로 제주도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고용보장

고용은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정장애인수 95만 6천 44명 가운데 95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38.4%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를 보면, 사무·관리전문가가 3.0%, 서비스

5.7%, 농어업 10%, 기능.노무 13.1%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의무적으로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고용률 2%를 위반할 경우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60%를 의무고용인원에 미달되는 인원수만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체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장애인직업훈련사업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및 응자 사업,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다. 95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309명의 장애인만을 채용하여 0.83%의 고용율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체의 경우는 9,097명으로 0.4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의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정확한 분석을 내릴 수는 없으나 장애인의무고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체로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에는 적용 사업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정책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고용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활동도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제한되어 제주도 장애인의 경우는 거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 고용보장 정책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보장

장애인의 의료보장은 장애인의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높이며 장애인이 제대로 사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보장 정책으로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으며 이 중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1996년도 예산을 기초로 살펴보면, 34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총 3,100,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35명의 장애인에게 총 7,000,000원을 보장구와 관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994년도에 재활병의원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치료 및 의료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4) 교육보장

장애로 말미암아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은 특수교육의 경우 현재 108개 특수학교에서 22,000명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경우 통합교육차원에서 3,440학급, 32,000명의 장애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증의 지체, 시각,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대학 및 전문대의 특례입학제도를 도입하여 대학별 정원외 입학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보장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보장책은 소득보장지원책에서 이미 거론한 바 있는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으로, 96년도 도예산에 의하여 49명의 장애인가구에게 총 2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주거보장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으며 주거환경에 있어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주거보장은 필요성이 비교적 높은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장애인의 주거보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제공, 영구임대주택입주시 가산점부여가 있다.

한편, 96년도 제주도 예산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주거보장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10명의 불우장애인에게 전세금으로 70,000,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결국 1인당 평균 7,000,000원을 지급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의 장애인 주거보장 정책은 지원자 수의 부족과 함께 지원수준, 이 두 가지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복지서비스현황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서 장애인복지 관련프로그램도 가장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유형별 기관분포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유로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단종복지관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고, 기관 수가 적으며 관할지역이 서울 전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종별복지관이 없어 종합복지관 단 1곳만이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 대상을 제외한 장애유형 즉,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적으며 이들의 서비스 접근이 그만큼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복지관 프로그램 영역 가운데 가장 활성화된 것은 의료재활, 직업체활, 사회심리재활 영역이며 교육재활, 가족대상서비스, 정보관련서비스 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역별로 보면, 의료재활에서는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기관이 가장 많으며 사회심리재활에서는 상담프로그램이, 그리고 직업체활에서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기관이 가장 많다.

제주도의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인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을 검토해보면, 89년도에 지어진 본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체활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상담 및 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에 완공된 분관에서는 자활치료 및 작업, 심리치료, 언어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앞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다.

제 2절 제주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1. 예산문제

장애인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아직도 일반 회계 예산의 0.13%이며, 이 중 장애인시설 운영예산에 67%, 나머지는 재가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어 주로 장애인수용시설에 책정되고 있다.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인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은 1990년의 6%에서 9%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출내용을 보면 아직도 시설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2. 제도의 문제

1) 소득보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 미흡

획일적인 선정기준

생활보호 선정기준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장애등급별,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차이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불충분한 보호수준

부양의무자 범위가 비현실적이고 비융통적이기 때문에 장애인가구의 현실, 즉 장애인이 있음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예산규모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자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한된 생계보조 수당 지급범위와 불충분한 지급수준

현재 생계보조 수당은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보장구 등의 지원이 생활보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 빈곤 계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우 1급이 없으므로 다른 장애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절대빈곤층이라 할지라도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그 액수도 기본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매우 흡족하며, 근로불능의 중증장애인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수당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수당제도가 다양하지 못해 장애인 현실에 적절하지 못하다.

(2) 장애인은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은 일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장애인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시책은 장애인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3)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의 제한성

현재의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은 1996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포함되지만 성적 상위 30%이내인 자에게만 해당되고 저소득층의 기준도 너무 제한되어 있어 자격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4) 장애인 이동 관련 요금 감면제도의 불충분성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제적 부담경감시책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적용대상이나 지원범위에 있어 제한적이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철도요금의 경우 운행빈도가 많지 않고 이용도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의 여행이나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 비현실적이다.

(5) 무주택 빈곤장애인에 대한 주거 보장이 미흡

현재 장애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은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즉, 등록장애인가구의 경우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주택보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의 지원 또는 응자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의 경우 활동편의를 위하여 주택구조를 개조할 필요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주택개량자금의 지원이나 응자제도가 전무하다. 그리고 group home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1994년 현재 8개소에 불과하며, 제주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group home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

2) 고용

(1) 장애특성과 장애정도에 맞는 직종개발 및 직업훈련 미흡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의 경우 직종이 매우 제한적이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이 취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문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양질의 직업체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취업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직업체활체계의 미비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전 직업평가체계가 미흡하여 취업시 자신의 근로능력에 맞는 직무에 배치되고 있지 않고,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와 사업체에 대한 고용관리기술지도가 미비하여 장애인의 직업체활 적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취업 후 사후지도 가능 미비로 취업 후 1년 이내 이직율이 약 70%로 이직율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만을 위한 직업체활 시설은 없으며, 근로시설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의 보호작업장에서의 간단한 작업훈련이 있을 뿐이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취업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3) 의료재활

(1) 보장구 교부실적 저조

제주도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 장애인이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보장구는 '95년 현재 보장구 교부대상자는 35명이며, 예산은 7백만원에 불과하여 교부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2)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설치 기피

장애인환자의 경우 일반환자보다 평균 재원일수가 높아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 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종합병원 693개소 중 117개소(17%)만 재활의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재활병의원이 1개소에 불과한 제주도의 경우 의료재활서비스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3) 보건의료기술의 낙후 및 보장구에 대한 정보부족

의수족 등 보장구가 무겁고 비싸며 고장이 자주 나는 등 불편하고,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고가품은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여 고장이 나는 경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3. 법의 문제

1) 장애인의 고용실적 저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지방자치 단체는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1995년의 장애인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309명(0.83%), 사업체의무고용자수는 9,097명(0.43%)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 1992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21개소이며 고용된 장애인 수는 39명으로,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상당히 저조한 수치이다.

2) 조세감면문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조세감면의 내용을 보면 소득세, 인적공제도 종합소득세 연 48만원 공제와, 상속세 인적공제도 75세 기준에 상속 당시 나이를 뺀 후의 기간에 300만을 곱한 금액 공제 정도밖에는 없다. 따라서 공제액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의 종류도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소득보장에 대한 실효가 낮다. 상속세 공제제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상속이 상속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공제범위가 인적 공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주택상속에 대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품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용수입물품의 관세감면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및 일상생활용품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 수입물품의 관세감면품목이 53종으로 국한되고 보장구 생산용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이 안되어 장애인이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 장애인의 자격 취득에 제약이 되는 법령

장애인은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장애인이 전문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은 저임금 단순노동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과 관련하여 더 큰 문제는 장애인에게 자격 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는 법령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보사부), 수의사법(농수산부), 건설기계관리법(건설부), 선원법(교통부), 도로교통법(내무부), 영사기사면허령(문체부)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위생사나 주조사자격의 취득제한은 전원의 건강진단 합격기준의 차등 적용,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제한 등의 제약법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보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

4. 시설의 문제

1) 장애인 이용시설의 부족

전국의 등록장애인 369,443명 중 시설 수용자 14,494명을 제외한 재가장애인은 96%이지만 재가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과, 체육과, 재활병의원 등 이용시설은 57개소 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 대다수 장애인이 이용시설을 접근하기 어렵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수용시설 2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수가 52명에 불과하여 제주도 전체장애인 4,745명의 1.1%에 해당하는 장애인만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인원이 이용시설 2개소(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재활병의원 1개소)만을 이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공무원을 비롯 건물주의 인식부족으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부진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1,403개소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95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건수는 29건에 불과하여 더 많은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부족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 훈련과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의 일반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근로복지공사 산하 산업체활원, 장애인전문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나, 1993년도 직업훈련수료자는 43천명 중 56명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일반직업훈련원에서 일반인과 통합훈련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결과 총훈련인원 23천명여 중에서 장애인은 38명에 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기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수학교의 경우 시설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며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시설 역시 자립작업장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직업훈련은 시키고 있는 곳은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과 삼육재활인정 직업훈련원, 덕산직업체활원 3개소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시설이 필요하며, 제주도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의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직종에 있어 자기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취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훈련직종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

4)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시설 부족

제주도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시설은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보호작업장과 춘강장애인 근로센터 2곳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5. 운영의 문제

1)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 미흡

현재 제주도에는 재활병의원을 제외한 이용시설은 제주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인데, 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주로 언어치료와 같은 의료재활 프로그램과 조기교육실 운영이 주가 되고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중증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부족

중증장애인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현재 중증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순회재활서비스가 주요 사업인데, 서비스 내용이 주로 상담이나 간단한 진료수준에 그쳐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3) 전문화된 조기 특수교육시설의 부족

장애인아동의 경우 전문화된 조기 특수교육을 받는다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특수교육이 갖는 의미는 크다. 따라서 전문화된 조기특수교육시설이 장애아동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있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5-10세)가 1995년9월 30일 현재 15명이고, 5세이하 장애인수와 파악하지 않은 장애인수를 감안한다면 조기특수교육시설이 장애아동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6.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1)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역시 다른 사회복지행정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대한 행정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행정기관들은 이를 단순히 전달, 시행하는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달체계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비스 전달자로의 자율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서비스 통합의 결여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재활분야별로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재활, 소득보장, 직업재활 관련 행정서비스와 노동부 중심의 산업재해장애인의 재활서비스, 교육부 중심의 일반교육재활 서비스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어 중앙정부의 관할 부서에서 결정된 정책을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을 통해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 행정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훈처, 총무처, 국방부 등에서 매우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장애인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3) 보건복지행정의 내무행정으로의 편입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하달되는 정책지침이 내무부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며,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일반행정공무원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투입되어 전문성 확보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이들이 일반행정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고, 둘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충분히 파견되어 있는 여건이 아니므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4) 각종 위원회의 활동 부진

행정체계의 각 수준에서 주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일년에 1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전혀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극히 형식적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위원회의 활동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5) 기능분담의 모호성

현행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체계 및 사무분담 자체는 기초단체에 대한 기능배분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을 배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무분담규칙에서도 사무배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운영상 상부기관이 많은 부분에서 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제3절 제주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 제주도 장애인 복지의 정책방향

- 소득능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
- 장애인의 교육기회 및 통합교육 확대
- 재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강화
- 수용시설보다는 이용시설 중심의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 장애인에 대한 사회환경 및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참여 기반 조성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본방향	세부계획
◦ 장애인의 최저생계보장	◦ 생계보조수당 지원 확대
◦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확대
◦ 장애인의 의료지원 강화	◦ 장애인의료지원비 확대
◦ 장애인의 주거안정 보장	◦ 장애인 주택자금 및 전세보증금 읍자
◦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강화	◦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확대

1) 세부계획

(1) 생계보조수당의 지원 확대

현재 등록된 중증장애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정신지체의 경우 3급 포함)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보조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2)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중학생,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저소득 장애인가구주의 중학생,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 자녀 (단,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이 상위 30% 안에 들 경우)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를 전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현재 자녀 교육비를 받기 위한 저소득 가구의 자격기준도 상향조정 한다.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저소득 장애인으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액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한다.

(4) 장애인 주택자금 및 전세 보증금 읍자

무주택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구입비 및 전세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읍자해 준다.

(5)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확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구주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저소득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의 자격기준을 연차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여액, 상환조건도 점차 확대한다.

2. 장애인의 통합교육 확대

기본방향	세부계획
◦ 조기특수교육의 강화	◦ 장애아동 조기특수교육 강화
◦ 통합교육의 여건조성	◦ 통합교육 지원 센터 설립
◦ 장애인의 통합교육확대	◦ 중증장애인을 위한 순회교사 제도 도입

1) 세부계획

(1) 정신지체아동 조기 특수교육의 강화

-단기적으로는 현재 대기자가 많은 조기 언어치료교실을 확대하고 조기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간다.

-정신지체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특수교육 실시로 취학전 기초학습 등 인지력 향상하며, 언어장애인의 원만한 언어생활 영위로 생산적인 인간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기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한다.

(2) 통합교육 지원센터 설립

향후 건설할 장애인 전용 종합타운내에 통합교육 지원센터를 두고 통합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통합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재발 및 실시한다.

(3) 중증장애인을 위한 순회교사 제도

학교 통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사를 파견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 를 보장해 준다. 순회교사는 시.군(구) 교육청이나 특수학교에 배치한다.

3. 장애인의 취업 촉진

기본방향	세부계획
◦ 지역정서에 적합한 장애인직업체활모색	◦ 제주도형 직업체활교육 실시
◦ 중증 장애인의 고용강화	◦ 장애인근로센터 확대
◦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개척	◦ 장애인공판장 운영
◦ 종합적인 직업체활체계 구축	◦ 장애인 전용시설에 정보센터 설치

1) 세부계획

(1) 제주도형 직업체활교육 실시

-제주도의 지역정서에 적합한 직업체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장인종합복지관이나 근로센터에서 집중적인 직업체활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읍.면단위나 마을단위로 소집단을 형성하여 전달 교육하도록 한다.

-읍.면.동 단위의 생산작업장은 새마을회관, 마을복지관, 폐교학교, 리사무소 등 존의 여유 공간을 피악하여 최대한 활용한다.

(2) 장애인 근로센터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설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을 재가 중증장애인을 취업사업체로 육성, 전환한다.

(3) 장애인 공판장 운영

장애인이 만든 제품의 판로 확보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도모 및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

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4) 장애인 정보센터 설치

장애인들이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정보센터는 장애인 전용 종합타운내에 설치하여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4. 재활서비스의 확대

기본방향	세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재활사업의 확대◦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회의료재활서비스의 강화◦ 그룹홈 프로그램 실시◦ 주간위탁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장애인 전용 종합타운 신축◦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 신축◦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부랑인 시설확충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수준의 향상	

1) 세부계획

(1) 순회의료재활 서비스의 강화

이동이 어려운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순회방문 진료 및 치료사업을 확대실시한다.

(2) 그룹홈 프로그램 실시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룹홈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한다.

(3) 주간위탁보호 시설 운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인을 돌볼 수 없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고 생활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주간위탁보호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단기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 운영하되 연차적으로 주간 위탁보호시설을 시,군, 구 단위로 설치한다.

(4)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 설치

정신지체장애아의 보호시설을 확대하여 연령에 구애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바람직한 성장도모와 부모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5) 장애인 전용 종합타운 신축

도유지, 또는 시유지를 확보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 문화시설, 체육시설, 보장구의 교부와 전시 및 판매소,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장애인 종합정보센터 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종합타운을 신축한다.

(6)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요양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위험부담 해소 및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한다.

*현황

-시설명 : 제주정신요양원

-위치 : 제주시 월평동 292-5

-규모 : 부지 13,389m², 건물 2,749m²

-수용인원 : 250명 (종사자 16명)

*투자계획

-기간 : 1996 -2005

-재원 : 6,166백만원 (국비 4,437백만원, 도비 1,110백만원, 자기부담 619백만원)

(7) 부랑인 시설확충

고도산업 사회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관심소홀로 소외계층이 점증되고 신체적, 정신적 결합 등으로 일정한 주거, 연고자 없이 배회하는 생계 무능력자를 수용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도움을 주기위해 확충한다.

*현황

-시설명 : 제주시립회망원

-위치 : 제주시 월평동 291-1

-규모 : 부지 2,793m², 건물 720m²

-수용인원 : 정원 75명, 현원105명

*추진계획

-부랑인 시설확충 : 1개소 -2개소

-위치 : 서귀포시 관내 (서귀포시립회망원)

-규모 : 부지 1500평(시유지), 건물 240평

-시설년도 : 97년도

-수용기준 : 50명

-소요사업비 : 351백만원(국비 281백만원, 지방비 70백만원)

5.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본방향	세부계획
◦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기반조성	◦ 수화통역사 설치 및 파견사업
◦ 장애인의 편의도모 시책 추진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활성화 ◦ 장애인등록신청 절차의 간소화 ◦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

1) 세부계획

(1) 수화통역사 설치 및 파견사업

청각장애인단체 내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이 통역 서비스를 청할 경우 이를 지원해 준다. 수화통역사 파견사업은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우 교통수단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심부름센터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운행차량을 증차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3) 장애인 등록과 신청절차의 간소화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에 전화로 신청하며 읍.면.동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후 방문하여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읍.면.동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신청을 받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애인 진단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장애인 진단비를 현실화한다.

-장애인 등록을 전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4)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운영 활성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인 산간, 낙도의 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이동순회 상담을 실시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도모한다.

* 이글은 제주형 사회복지시책(1996~2005)에서 부분 발췌한 것임

<알림>

• 정책토론회 '통합고용의 이념과 실제'

날짜 : 1995. 10. 2 (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발제 : 오길승(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